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4.11.12] (일부개정) 2024.11.12 조례 제1653호

> 관리책임부서명 : 금정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519-5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식정보 이용 활성화,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정도서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33(청룡동)
- 2. 금샘도서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4(부곡동)

제3조(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2.>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자료의 구성,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3. 위탁 자료에 관한 사항
-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취미·교양 강좌 등 수강료 결정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 2. 문화계·교육계 전문가
- 3.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정도서관 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도서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3.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③ 취미·교양 강좌 등의 수강 신청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강료의 결정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의2(주차요금) ① 구청장은 금샘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금샘도서관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면제
-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 50% 감경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 1.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3. 다자녀가정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
-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2.20.>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수강이 어렵게 된 경우
- 3.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5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술에 취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대출 자료의 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도서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한다.
- ③ 도서관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할 자료는 도서관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위탁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에게 배상하여 야 한다.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도서관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이용 및 독서인구 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3조,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3.2.20.>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부칙 <조례 제1543호, 202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2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